

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(定款)변경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09월 01일
제출자 : (재)세종문화회관 사장

1. 제안이유

가. ‘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’ 및 ‘서울시 투자·출연 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’ 개정 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8948호, 2020.7.22.)

- 정관 상 노동이사의 권한 조항 신설
 - ▶ 이사회 안건 제출권, 정보 열람권 등

나. 신규직군 신설 및 정원 확보 (사장방침-864호, 2020.08.13.)

- 시설공무직(시설, 방재, 미화)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른 신규직군(시설 서비스직) 신설
-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원 확보 : 총 124명

시설 (기계, 전기, 통신, 영선, 조경)	방재 (소방안전, 경비)	미화 (청소)
34	47	43

- ▶ 별표 2 정원표 상 시설서비스직 포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관 상 노동이사의 권한 조항 신설 <13조 ⑦항>

나. 시설서비스직 신설 및 정원 확보 <별표 2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
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~⑥생략	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~⑥생략 ⑦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, 이사회 안전제출권 및 정보열람권이 있다. (신설 2020.00.00)																						
부 칙 (2020. 4. 13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	부 칙 (2020. 00. 00)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
<별표 2> 개정 (2020.4.13) 정 원 표 (단위 : 명)	<별표 2> 개정 (2020.4.13., 2020.00.00) 정 원 표 (단위 : 명)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사장</th> <th>사무처</th> <th>예술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원</td> <td>702</td> <td>1</td> <td>157</td> <td>54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정원	702	1	157	544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사장</th> <th>사무처</th> <th>예술단</th> <th>시설서비스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정원</td> <td>826</td> <td>1</td> <td>157</td> <td>544</td> <td>12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시설서비스	정원	826	1	157	544	124
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																		
정원	702	1	157	544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사장	사무처	예술단	시설서비스																		
정원	826	1	157	544	124																		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1)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 알림

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8948호, 2020.07.22.)

2) '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' 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

(서울시 공기업담당관, 2020.07.16.)

3) 시설관리공무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군 신설 및 정원 확보(안)

(사장방침-864호, 2020.08.13.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이사회 의결 예정

붙임 1.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 알림
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8948호, 2020.07.22.)

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!

I-SEOUL-U

서울특별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

1. 공기업담당관-827(2020.1.16.)호와 관련입니다.
2.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「**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**」 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'20. 7.16.자로 공포·시행되어 「**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**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보내드립니다.
3. 투자·출연기관에서는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셔서 **임직원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영하여 노동이사의 직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 (*법적근거 :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항,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1항)

※ **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시행일자 : 2020. 7. 16.자**

- 붙임 : 1.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1부,
2.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부,
3. 조례 개정 공포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					
수신자	투자기관 시 주관부서,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, 서울시투자기관, 서울시출연기관				
주부관	공기연출총괄과	공기연출담당			
협조자					
시행	공기업담당관-8948	(2020. 07. 22.)	접수	정책기획팀-1778	(2020. 7. 22.)
우	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) 서울시청 신청사 8층		http://finance.seoul.go.kr/publiccenterprises		
전화	(02)2133-6773	전송	(02)2133-0864	이메일	jusarang1@seoul.go.kr
					대시민공개

붙임 2. ‘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’ 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 투자
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지침 中 발췌 (서울시 공기업담당관, 2020.07.16.)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시행에 따른
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

2020. 7. 16.

기 획 조 정 실
(공기업담당관)

8 (권한과 책임) 법령규정 반영, 비상임이사와 동일

제9조(권한)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책임 등) 노동이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□ 권한 : 이사회 안건 제출권, 이사회 참여, 의결권(정보권, 발언권 등 포함) 행사

○ 사업계획 / 예산과 결산 / 정관 및 규정의 개정 / 조직 및 기구의 개편

○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임대 / 중요 대행사업의 위수탁 사항 등

○ 이사회 안건 제출권 정관에 반영

-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40일 이내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
-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

○ 정보열람권 정관에 반영

- 노동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
- 단, 기관은 해당 정보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
- 노동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함

붙임 3. 시설관리공무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직군 신설 및 정원 확보(안)
(사장방침-864호, 2020.08.13.)

문서번호	정책기획팀-1978
보존기간	중영구
결재일자	2020. 8. 18.
공개여부	공개
발령번호	발령번호, 사장 방침 제(864)호

**시설관리공무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
직군신설 및 정원 확보(안)**



★팀원	정책기획팀장	경영본부장	사장
			I
별 조			일상감사
		안전관리팀장 시설운영팀장 인사혁신팀장	

경영본부 정책기획팀